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26
------	------

2022. 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0일, 김소영 의원(찬성자 11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3.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우수 이수자 선정 방법 및 절차와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전수 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동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전승교육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명예보유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8호).

다. 전수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라. 전승공동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마.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및 전승교육사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바.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 신설).

사. 시장이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의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규정, 전승 공헌이 있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근거 마련,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최근 주요 개정 현황 >

연번	구분	개정일(시행일)	주요내용
1	제15173호	2017.12.12. (2018.6.13.)	국가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제16056호	2018.12.24. (2019.6.25.)	전수교육조교가 전승 공헌이 있는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
3	제17404호	2020.6.9. (2020.12.10.)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
4	제18766호	2022.1.18. (2022.7.19.)	전승공동체 정의 규정 및 지원 조항 신설

나. 서울시 무형문화재 현황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2022.02.08)에 따라 서울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강화와 시민 향유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 기타로 구분되며, 기능(공예, 음식, 복식 등) 26종목과 예능(음악, 민속놀이, 무용,

무예 등) 26종목, 총 52개의 지정종목이 있음.

- 서울시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승체계를 전수교육자,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로 단계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전수교육 단계에 따라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교육자로 나뉘며 서울시무형문화재전수자는 보유자(43명), 보유단체(14단체), 명예보유자(10명), 전수교육조교(17명), 전수장학생(56명)임.

<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 현황(2022. 3. 1. 기준) >

	종 목(개)				전 승 자(명)			명예 보유자	전수 장학생
	계	개인	단체	기타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합계	52	37	14	1	43	14	17	10	56
기능	26	26	-	-	16	-	5	6	12
예능	26	11	14	1	27	14	12	2	44

< 무형문화재 전수자 단계별 구분 >

- ◆ 보유자(보유단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단체)
- ◆ 명예보유자 : 보유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전승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 ◆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 ◆ 이수자 :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기·예능을 전수받은 사람으로 실력우수자
- ◆ 전수장학생 : 전수교육자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전수교육 단계

전수교육자 ※ 전수장학생 포함	⇒	이수자 ※ 입문 후 3년 이상 전수활동 후 심사	⇒	전수교육조교 ※ 이수 후 5년 이상 전수활동 후 심사	⇒	보유자 ※ 보유자 공모 및 인정심사	⇒	명예보유자 ※ 보유자 인정 해제
----------------------------	---	--------------------------------------	---	---	---	-------------------------------	---	-----------------------------

다. 세부 내용

1) ‘전승교육조교’ 에서 ‘전승교육사’ 로의 명칭 변경(안 제2조 등)

- 개정안은 ‘전수교육조교’ 의 명칭을 ‘전승교육사’ 로 변경하고 전승 교육사에게도 독자적인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조교들의 명예를 높여 전승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 ‘전수교육조교’ 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 로 지칭하고 이러한 ‘보유자’ 의 전수교육을 보조 하는 사람임.
 - 상위법령에서 전수교육조교 명칭은 1983년 전수교육보조자로 처음 신설됐으며 2001년에 ‘전수교육조교’로 2020년에 ‘전수교육사’ 로 명칭이 개정되어 왔음.
-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공여부는 전승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고 전승의 성공은 전수생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좌우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전수생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승 교육사에게도 전수교육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보유자에게만 이수자 양성과 전수교육 추천권이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2) 전승공동체 정의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4조제5항 등)

- 개정안에서 ‘전승공동체’의 정의를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취득·실현할 수 있는 보유자(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실현·전승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전승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그동안 전승현장에서는 ▶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전승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점 ▶ 전통마을 등 전승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전통 지식이나 생활 관습 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 동 개정안을 통해 김치담그기, 활쏘기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전승공동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전승공동체의 의미가 모호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임.

3) 전승 공헌이 있는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 등)

-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예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2001년부터 시행 중이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오고 있음.

- 전수교육사의 명예보유자로 인정은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사가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인적 단절을 방지한다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4) 전수교육 참여·전승활동 실적이 뛰어난 우수 이수자 지원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 현행 조례¹⁾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음.
 - 이수자는 전수교육자로 입문 후 3년 이상 전수활동 후 심사를 통과한 사람으로 서울시에는 약 500명의 이수자가 있음.
- 따라서 이수활동 실적이 우수한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승지원 체계를 견고히 하고, 대중화나 수익성이 적어 전수가 취약한 종목 이수자들의 전승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전수장학생)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 기준 삭제(안 제36조)

- 현행 조례는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 요건을 별표(음악·무용 18~30세, 공예 18~35세, 연극·민속놀이·제례 등 18~4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및 타 시도 조례에서는 연령기준을 삭제하였음.²⁾
-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소질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전수장학생을 선발·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극심한 고령화 사회로 인적자원이 전환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하고, 소질이나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여 전통문화의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6) 보유자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안 제43조) 및 과태료 조항 신설(안 제44조)

- 보유자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무자격자를 일반인이 전승자로 오인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전승질서를 확립하고 무형문화재라는 일신전속적 자격에 대한 전승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 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2) (국가) 2014. 12. 30.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요건 삭제 (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2개(서울, 전남) 지자체만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요건을 규정

라.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종합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법적정합성이 유효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그리고 중국과의 무형유산 등재 경쟁 등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대내외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승공동체 등의 개념을 통해 서울시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현행 국가무형문화재처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지만 인정범위와 기준,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26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이종환,
최영주, 황규복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승교육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나. 명예보유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8호)
- 다. 전승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라. 전승공동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 마.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및 전승교육사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 바.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 신설)
- 사. 시장이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이하“시””를 “서울특별시(이하“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수교육조교”란”을 ““전승교육사”란”으로,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을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인정된”을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동체”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위원회 등”을 “위원회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유자의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전수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21조제1항 전단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를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수교육조교의”를 “전승교육사의”로, “자를 전수교육조교”를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전수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수교육조교가”를 “전승교육사가”로, “전수교육조교로”를

“전승교육사로”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을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를 “필요한 경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지급기준은”을 “지원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있으며,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중지한다”를 “중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지”를 “중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활용에뚜렷한”을 “활용에 뚜렷한”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4조(과태료) 시장은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 법 제5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무형문화재”란 <u>서울특별시</u> (이하“시”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사. (생략)</p> <p>2. ~ 4. (생략)</p> <p>5. “<u>전수교육조교</u>”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u>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u> 사람을 말한다.</p> <p>6.·7. (생략)</p> <p>8. “<u>명예보유자</u>”란 보유자 중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u>인정된</u> 사람을 말한다.</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u>서울특별시(이하 “시”</u>-----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사.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전승교육사</u>”란 ----- ----- <u>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u> ----- -----.</p> <p>6.·7. (현행과 같음)</p> <p>8. ----- ----- <u>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u> <u>중에서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u> ----.</p> <p>9. “<u>전수교육</u>”이란 제34조에 따라 <u>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u>을 말</p>

<신 설>

제7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
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서
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2.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
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4.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5조(수당 등) 위원회등에 출석
한 위원과 전문위원 및 외부전

한다.

10. “전승공동체”란 제19조제1
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
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
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
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
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
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
체를 말한다.

제7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
회의 설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전승교육사 -----

3.·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

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략)
<신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

-----.

----- 위
위원회-----
-----.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 제1항 또는 제2항-----

-----.
1. 무형문화재 -----

동 기간 및 실적

2.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
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④ (생략)

제21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시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③ 시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

2. 무형문화재 -----

3. 전수교육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1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을 실시하기 -----

---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

② 전승교육사-----

--- 사람은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전승교육사의 -----

체로 하여금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보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 사람을 전승교육사 -----
-----.

④ -----
----- 전승교육사 -----
-----.

전승교육사-----
-----.

⑤ 전승교육사-----
-----.

제23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 전승교육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 5. (생략)
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8.·9. (생략)
10.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

-----.

1. ----- 전승교육사-----
2. ~ 5. (현행과 같음)
6. -----
----- 전승교육사-----

7. ----- 전수교육-----

- 8.·9. (현행과 같음)
10. ----- 전승교육사가 -----
----- 전승교육사
로 -----

②·③ (생략)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2. ~ 5. (생략)

③ ~ ⑧ (생략)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생략)

②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전승교육사-----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
-----.

1.·2. (현행과 같음)

③ -----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 필요한 경비 -----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신설>

-----.

-----.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삭제>

3.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
목의 기능·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발연령은 별표 2
와 같다.

④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
이 제35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
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생략)

⑥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
다.

⑦ (생략)

제42조(표창) 시장은 보유자와 명
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무형문
화재의 보호·육성·활용에 뚜
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신설>

-- 있다.

④ -----

-----.

중단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중단 -----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표창) -----

----- 활용에 뚜
렷한 -----
-----.

제4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

<신 설>

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
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4조(과태료) 시장은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 법 제58조에 따
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
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기준에
따른다.